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전채권·채무 소멸시효 기간 상향 등〉

■ 나경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447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금전채권·채무 소멸시효 기간 상향	3
2.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자에 대한 입후보 제한	10
3.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등의 체납자 명단 공개	1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나경원의원 등 39인
2. 제 안 일 : 2025. 2. 26.
3. 회 부 일 : 2025. 2. 27.

II. 제안이유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약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음.

선거당국이 징수해야 하는 이러한 비용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5년으로, 관할세무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이에, 소멸시효제도를 악용하고 다시 선거에 출마하여 법정 경비를 보전받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당선무효된 자 등의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과 징수 등의 소멸시효 기간을 「국가재정법」 등에 따른 5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년으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나.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은 무효로 함(안 제49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등).

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금액에 대한 체납이 있는 때에는 체납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도록 함(안 제280조 신설).

IV. 검토의견

1. 금전채권·채무 소멸시효 기간 연장

개정안은 동법에 적용되는 금전채권 및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을 현행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여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u>제14조의2(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u>

현행법은 당선이 무효로 된 자 등에 대한 기탁금·선거보전비용 및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등의 반환과 관련된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¹⁾ 및 「지방재정법」²⁾에 따르면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관련 반환금 등의 경우도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됨.

1)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란 권리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권리소멸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하여 통설적 입장은 ① 법적 안정성, ② 증명곤란에 빠진 당사자의 구제, ③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 등에서 찾고 있음.³⁾

그런데, 당선무효 등으로 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등을 반환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 기간 5년이 경과되어 기탁금 등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못하고,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등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⁴⁾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 현황을 보면, 2024년 7월 31일 기준으로 반환 명령을 받은 사람은 423명, 반환 명령액은 466억 7,800만원으로, 이 중 343명이 260억 6,000만원을 반환하였고, 80명이 206억 1,8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3) 지원립, 민법강의 제16판, 홍문사 2019, p.382

4) “당선무효 123명, 선거비용 230억 반환안해…먹튀 후 재출마도”, 2023.10.10., 동아일보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선 거 명	반환대상		반환완료		반환진행(미반환)		소멸시효 완성	
	인원 (교)	금액 (교)	인원 (교)	금액 (교)	인원 (교)	금액 (교)	인원 (교)	금액 (교)
교육감 선거(2008년)	1	2,885	-	1,888	1	997	-	-
제17대 국회의원선거(2004년)	6	543	6	543	-	-	1	92
제18대 국회의원선거(2008년)	9	991	9	991	-	-	1	136
제19대 국회의원선거(2012년)	15	2,036	14	1,848	1	188	2	247
제20대 국회의원선거(2016년)	33	3,841	24	2,947	9	894	-	-
제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5	723	4	645	1	78	-	-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06년)	75	2,601	74	2,537	1	64	12	217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년)	77 (4)	12,707 (7,463)	71 (0)	5,569 (639)	6 (4)	7,138 (6,824)	33 (1)	2,798 (1,361)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년)	97 (9)	10,392 (6,281)	75 (4)	5,401 (1,828)	22 (5)	4,991 (4,453)	1	4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8년)	60 (2)	4,811 (1,513)	42 (0)	2,249 (28)	18 (2)	2,562 (1,485)	-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45 (3)	5,148 (2,772)	24 (0)	1,442 (1)	21 (3)	3,706 (2,771)	-	-
총 계	423 (18)	46,678 (18,029)	343 (4)	26,060 (2,496)	80 (14)	20,618 (15,533)	50 (1)	3,538 (1,361)

() 는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반환 대상자와 반환대상 금액 등을 말함.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미반환금 환수율 제고를 위하여 국세청과 협력을 통한 징수 재위탁, 소멸시효연장 재판청구,⁵⁾ 미반환자 중 재출마자의 지급예정 선거보전비용 상계처리 등 가능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인원이 50명에 이르고 있고 그 금액은 35억 3,800만원에 달하고 있음.

5) 2019년부터 소멸시효 중단없이 소멸시효가 진행중인 선거비용보전금 반환 채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전 반환청구 소송 제기를 통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여 관리하고 있음.

※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이에 개정안은 동법의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5년에서 20년으로 상향하여 별도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자 등에 대한 기탁금·선거보전비용 등 선거 관련 반환금의 환수실적을 개선하는 등 현행 소멸시효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다만, 금전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규정한 입법례를 보면,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민법」은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으로 하면서, 단기(1년·3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규정⁶⁾하고 있고,

「상법」⁷⁾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5년, 「국세기본법」⁸⁾·「지방세기본법」⁹⁾·「관세법」¹⁰⁾은 징수금액에 따라 소멸시효를

6)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7)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8)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9)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

2. 제1호 외의 지방세: 5년

10) 「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의

10년 및 5년으로 각각 달리 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¹¹⁾·군인연금¹²⁾·사립학교교직원연금¹³⁾ 등 직역연금¹⁴⁾과 기초연금¹⁵⁾·장애인연금¹⁶⁾ 환수금의 소멸시효기간은 각각 5년으로 하고 있는 등 기간을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현행 입법례와 소멸시효 제도의 목적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20년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민법」, 「상법」 등의 소멸시효 기간 규정을 참고하되, 국가의 금전채권 확보 가능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10년

2. 제1호 외의 관세: 5년

11) 「공무원연금법」

제88조(시효) ①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이 법에 따른 기여금, 환수금 및 그 밖의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2) 「군인연금법」

제52조(시효) ①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이 법에 따른 기여금과 환수금,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국방부장관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4조(시효) ①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요양급여·간병급여·부조급여는 3년간, 퇴직급여·퇴직유족급여·비직무상장해급여·퇴직수당·장해급여·재해유족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잘못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 받거나 징수할 권리 및 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14) 공무원연금 등 노후생활보장, 재해보상 및 퇴직금의 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연금과 함께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에 속함.

15) 「기초연금법」

제23조(시효) 제19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16) 「장애인연금법」

제20조(시효) 수급자의 장애인연금을 받을 권리와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환수할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

등의 비교형량을 통해 적정기간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한편, 기탁금·포상금의 미반환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절차가 진행되나, 선거비용의 미반환 시 대통령·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절차가 다르므로,¹⁷⁾ 개정안의 입법화를 고려할 경우 권리의 주체에 국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기탁금·포상금 및 선거비용 미반환 시 체납처분 비교》

구 분	기탁금·포상금	선거비용
체납처분 징수 위탁 주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체납처분 징수 주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 (관할세무서장)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 (관할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 장 선거 (체납처분 징수 주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 (관할세무서장)	<u>지방세</u>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한, 법제적 측면에서는 소멸시효의 효력에 관한 해석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근의 입법례를 참고¹⁸⁾하여,

17)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⑥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5항 후단의 기한 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안 중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라는 표현을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9년부터 소멸시효의 중단없이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선거비용보전금 반환 채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전 반환청구 소송 제기를 통해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¹⁹⁾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하면서, 환수의 실효성을 위해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정할지는 국회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임.

18)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681면

19)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2.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자에 대한 입후보 제한

개정안은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생략)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管轄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는 候補者登録申請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受理하여야 하되, 登録申請書·政黨의 推薦書와 本人承諾書·選舉權者의 推薦狀·寄託金 및 第4項第2號 내지 제5호의 規定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u>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受理할 수 없다. 다만, 候補者의 被選舉權에 관한 證明書類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受理하되,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機關 또는 團體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選舉區選舉管理委員會에 回報하여</u>	⑧ ----- ----- ----- ----- ----- -----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9조의2를 위반한 등록신청-. ----- ----- ----- ----- ----- ----- -----

그런데, 당선무효 등으로 선거보전비용 및 기탁금 등을 반환하지 않은 채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거나, 이를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²¹⁾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자 중 공직선거 출마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명이 당선 무효형을 받고도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른 공직선거에 출마하였으며, 이 중 16명(당선자 6명, 낙선자 10명)이 선거비용을 다시 보전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음.

《보전비용 미반환자 중 기타 공직선거 출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당선무효형 받은 선거	반환대상 금액	반환금액	미반환금액	재출마 선거
1	제4회 지선	19	-	19	제6회 지선(낙선) 제7회 지선(낙선)
2	제4회 지선	26	-	26	제6회 지선(낙선)
3	제4회 지선	12	9	3	제6회 지선(낙선)
4	제4회 지선	24	-	24	제6회 지선(당선)
5	제4회 지선	21	-	21	제6회 지선(낙선) 제7회 지선(낙선)
6	제4회 지선	17	-	17	제7회 지선(당선) 제8회 지선(낙선)
7	제5회 지선	128	118	10	제7회 지선(낙선)

20)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1) “당선무효 123명, 선거비용 230억 반환안해…먹튀 후 재출마도”, 2023.10.10., 동아일보

(단위: 백만원)

연번	당선무효형 받은 선거	반환대상 금 액	반환금액	미반환금액	재출마 선거
8	제5회 지선	85	-	85	제7회 지선(낙선) 제21대 국선(낙선)
9	제5회 지선	37	-	37	제7회 지선(당선) 제8회 지선(당선)
10	제5회 지선	83	-	83	제7회 지선(당선) 제8회 지선(사퇴)
11	제5회 지선	110	-	110	제8회 지선(낙선)
12	제5회 지선	21	-	21	제7회 지선(낙선)
13	제5회 지선	32	-	32	제7회 지선(당선) 제8회 지선(당선)
14	제5회 지선	105	-	105	제8회 지선(낙선)
15	제5회 지선	80	-	80	제7회 지선(낙선) 제8회 지선(낙선) 제21대 국선(낙선)
16	제5회 지선	29	-	29	제7회 지선(낙선) 제8회 지선(낙선)
17	제6회 지선	33	-	33	제8회 지선(당선)
18	제6회 지선	111	1	110	제8회 지원(낙선)
19	제6회 지선	24	-	24	제8회 지선(낙선)
20	제6회 지선	136	-	136	제22대 국선(낙선)
21	제18대 국선	164	28	136	제6회 지선(낙선)

- 성명 등 개인정보 대신 연번으로 대체

- 노란색 셀 : 소멸시효 완성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에 개정안은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려는 것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므로, 당선무효 등의 사유로 선거보전비용 등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사람이 다시 공직에 입후보하게 될 경우 공직에 대한 비난과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자격 논란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당선무효가 확정된 개인은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 및 피선거권 제한을 이미 받았고,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무는 당선무효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채무로서 이러한 금전적 채무는 국세·지방세·공과금 미납 등과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국세·지방세·공과금의 미납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받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미반환이 피선거권 제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행법 제19조²²⁾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사유와 비교하여 그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2)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舉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피선거권 제한사유²³⁾》

일반 범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자	형법 제43조(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또는 제44조(자격정지)의 규정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선거권에 관하여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을 선고받은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상실된 자	
선거 범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벌금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의 선고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30⑥(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위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 포함)
국회 회의 방해 죄	국회법 §166의 죄를 범한 자 (형이 실효된 자 포함)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고려하여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사람이 반환 및 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실시할 공직선거에서 입후보를 제한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한다는 입장임.

23)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3.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등의 체납자 명단 공개

개정안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국가에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선거보전비용에 대한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매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280조(체납자의 명단 공개)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에 대한 체납자가 있는 때에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의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7조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2. 제135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4. 제265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②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하기 이전에 체납자에 대하여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할 수 없다.

	③ 제57조제3항·제135조의2제6항 및 제265조의2제3항에 따라 징수를 위탁받은 관할세무서장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제1항 및 각 호에 따른 금액의 납부 및 체납실적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개대상자 통지 및 소명, 납부 및 체납실적의 통지,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

명단공표 제도²⁴⁾는 행정법상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에 훼손을 가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하여 유권자로 하여금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에 대한 판단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 미반환금의 환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5월 25일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공직 적합성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과 함께 선거보전금 환수 실효성을 확보

24)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2024.5.)

하기 위해 반환기한까지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인적사항·반환사유·미반환금액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개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²⁵⁾

참고로, 개정안은 체납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경우 체납된 금액에 상관없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체납자의 명단공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²⁶⁾ 「지방세징수법」²⁷⁾등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액, 일정 기간 경과를 요건으로 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친 후 6개월이 경과된 후부터 재량적으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체납액 납부비율이 일정 부분 이상인 경우 등에는 명단 공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한편, 기탁금·포상금의 미반환 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절차가 진행되나, 선거비용의 미반환 시 대통령·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절차가 다르므로,²⁸⁾

25) 선관위 개정의견의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26) 국세징수법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의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최근 2년 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등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국세징수법」 제114조, 시행령 제105조).

27) 지방세징수법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한편, 체납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등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지방세징수법」 제11조, 시행령 제19조).

28) 「공직선거법」

제135조의2(선거비용보전의 제한)

⑥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제5항 후단의 기한 안에 해당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개정안의 입법화를 고려할 경우 안 제280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환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환기한까지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여야 한다.

참고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개정의견(2021.5.25.)

당선무효 선거보전금 환수 실효성 확보(§ 265의2)

현 행

: 규정 없음.

개정의견

- 반환기한까지 선거보전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사람의 인적사항·반환사유·미반환금액 등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함.
 - ※ 추후 반환자,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채무가 소멸된 자는 제외
- 미반환사유 최초 발생 시 명단을 정당에 통보하고, 이후 자진납부, 반환완료로 변동되는 정보는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미반환 사실이 있는 자가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해당선거와 미반환 금액을 기재하도록 함.
 - ※ 범죄경력에 실효된 형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반환사실’도 기재하도록 함.
- 지방선거에서 징수위탁대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함.
-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범죄(§263~§265)로 기소되거나 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함.

제안이유

-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공직적합성 판단을 위한 정보제공과 함께 선거보전금 환수 실효성을 확보하고, 당선무효 선거범죄로 기소 또는 위원회에 의하여 고발된 경우에는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여 선거보전금 미반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임.